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관련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 등 사전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동안 이행강제금을 유예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께서는 2024년 12월말까지 아래의 행정절차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숙박용도로 사용할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고
4. 아울러, 2024년 12월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을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건축과(052-290-4034)로, 숙박업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수신자 주식회사아름다운사람들 귀하 (우44707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43, 1층 (달동)), 박기범 귀하 (우 44658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1, 102동 1802호 (신항동, 롯데캐슬킹덤아파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귀하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주무관 박은빈 건축허가계장 방현진 건축과장 전결 2024. 5. 30.
변종대

협조자

시행 건축과-24336 (2024. 5. 30.) 접수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052-290-4035 팩스번호 052-290-4019 / qkrmsqls0118@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